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057호

제출년월일 2022. 10. . 제 출 자 보 육 과 장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인용사항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센터 이용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정사항 정비
 - 위원 15명 → 20명(안 제5조제1항)
 - 보육업무 담당국장 → 보육업무 담당국·과장(안 제5조제2항)
 - 위탁기간 3년 → 5년(안 제14조제2항)
- 나. 인용사항 정비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위원의 임기(안 제6조)
 - 보조금의 지급 등 → 비용(안 제5장)
 - 보조금의 지급 → 비용의 보조(안 제29조)
 - 비용의 보조와 관련된 인용사항 정비(안 제29조제1호)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규정 신설
 -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신설(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3까지)
-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호선하고, 개의하고 → 호선(互選)하고, 개의(開議)하고 (안 제5조)
 - 위원 1/3이상, 1인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1명(안 제8조)
 - 범위 안 → 범위(안 제10조)
 - 의한 → 따른(안 제2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24. ~ 9. 13.(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있음

- 제 출 자 :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 제출의견 : 2건

- 검토결과 : 반영(참고 2, 3)

2) 조례규칙심의회

가) 심 의 일 : 2022. 9. 28.

나) 심의결과 : 반영 1건, 미반영 1건(제22조제2항 원안존치 의결)

3)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4)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나) 경 기 도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 보조금"을 "김포시 보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고"를 "호선(互選)하고"로, "사람중에서 김포시장(이하"를 "사람중에서 김포시장(이하"로, "담당국장"을 "담당국·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제3항"을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임"을 "위촉직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를 "새로"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 1/3이상"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를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척된다"를 "제척(除斥)된다"로 한다. 제8조의3 중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0조의3제2항"을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사,영유"를 "의사, 영유"로, "전문

가등"을 "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24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이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한다.
- 제17조의3(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시설 사용료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전액
 -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 2. 프로그램 이용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자녀: 전액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액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전액
 - 마.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0퍼센트
 -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자녀: 50퍼센트
 -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 아.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 ②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을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25조"로 한다.

제28조 중 "인하여 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조금의 지급 등"을 "비용"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급)"을 "(비용의 보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으로 한다.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 2.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 3. 교재·교구비
-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 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1조 중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이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논관 실·과·소	보 육 과
입	실·과·소장 성 명	보육과장 최 명 순
안	팀 장 직위·성명	보육정책팀장 장 영 신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정 진 영(☎5323)

[별표 1]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사용료(제17조의2 관련)

	구	분	コス	사용료		
	명칭	사용목적	기준	면적기준(m²)	금액	
기 본	공연장 공연, 발표, 교육행사 등		1회 2시간	165 이하	20,000원	
시 설	회의실	회의, 학습 등	1회 2시간	34이상~ 165이하	20,000원	
	Ц (생난방비	1회 2시간	10,000원		
부	O) E	급향기기	1회 2시간	20,000원		
속 설	영사기		1회 2시간	10,00)0원	
비	조명	일반	1회 2시간	10,000원		
	4 6	종합	1회 2시간	15,00)0원	

※ 이용 주의사항

- ① 기준시간 2시간으로, 사용 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
- ② 시간당 요금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적용
- ③ 초과시간 30분 이내의 경우 시간당 요금의 50퍼센트, 30분 초과 시 100퍼센트 적용
-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⑤ 설비 설치 및 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제17조의2 관련)

[별표 2]

구 분		대여(이용)	금액	비고	
명칭	사용목적	기준	D FI	H <u>11</u>	
232	일반상담	_	무료	* 검사료 별도	
상담	전문상담	1회	50,000원 이하	* 검사료 별도	
장난감 도서관 개인		15일	연 10,000원		
교육 및 세미나 (부모, 보육 교직원)		_	무료	* 교재, 재료비 별도	
영유아 교육·체험 프로그램		_	무료	* 교재, 재료비 별도	
안전·문호	화 체험관	_	무료		
아이사형	방놀이터	_	무료		
어린이] 공연	1명	5,000원 이하		

[별표 3]

이용료 등 반환 기준(제17조의3 관련)

○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 이용 취소 및 중지된 경우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시설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금액				
모집 정원에	수강료 전액				
프로그램 개/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2/3	
	프로그램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1/2	
		총 수업 시간의 1/2이	반환 안함		
프로그램	장난감 도서관	납부일로부터	서비스 미이용	이용료 전액	
개설 후		30일 미만	서비스 이용	이용료의 1/2	
		납부일로부터 30일 이상 ~ 90일 미만	서비스 미이용	이용료의 1/2	
		납부일로부터 30일 이상	서비스 이용	반환 안함	
		납부일로부터 90일 이상	서비스 미이용	반환 안함	
비고	총 수업 시간은 강좌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							
ما ٥ ءا	시 실					(반)
이 용 자 (수 강 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감면 여부				□ 50퍼센트 감면 □ 100퍼센트 감면			
감면사유							
실제납부 이용료 ((시설에서 산정)		료)	금	금 원(₩))
이용기간 (수강기간)					~		
「김포시 보육 : 다.	「김포시 보육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이용료(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 다.					신청합니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또는 인)		
김 포 시 장 구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						
이 용 자	시 설 명 (강좌명)				(반)	
(수 강 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반환 이용료 (시설에서 산		기 _口		원 (₩)	
감면대상지) 여부		감면	면, 비	감면	
실제납부 이용료 (수강료)	금		원	(W)	
이용기간 (수강기간)				~		
계좌입금	거래은행			예금주명		
통 장	계좌번호					
반환신청사유						
「김포시 <u>년</u> 다.	「김포시 보육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	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경	김 포 시 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연 행	개 성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보 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과 <u>시 보조금</u>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 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u>호선하고</u>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사람중에서 김포시장(이하</u>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 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경우 보육업 무 <u>담당국장</u> 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1. ~ 5. (생 략)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제3항을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새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u>하며, 공무원인 위원의</u>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 출석위원</u>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생략)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며 간사는 <u>시장이</u>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 ⑥ (생 략)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 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심의에서 제척된다.

1. ~ 4. (생략)

② · ③ (생 략)

- 제8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0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 기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

<u>한다</u> .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u>재적위원 3분의 1 이상</u>
② <u>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u> <u>과반수</u>
③ (현행과 같음) ④
<u>1명</u> <u>보육업</u>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 이
의·································
①
<u>제척(除斥)된다</u>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u>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u> <u>3제2항</u>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에 따라 예산의 <u>범위 안</u>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설치) ① (생 략)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 법 시행령」 제12조 및 <u>「영유아 보</u> 육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 한다.

제13조(구성) ① (생 략)

-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u>「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u>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 ③ (생략)
- 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u>의사,영유</u>아 및 아동보육 <u>전문가등</u>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 ② 위탁기간은 <u>3년</u>으로 하되, 시장 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 ③ · ④ (생 략)
-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u>다음</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u>범위</u>
제11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유아보육</u>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u>다</u> .
제1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
<u>조</u>
4
의사, 영유
<u>전문가 등</u>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5년</u>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위탁의 취소) <u>다음 각 호</u>
의

1. ~ 4. (생 략)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 시행령 제 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법 시행령」 제24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 다.

② (생략)

〈신 설〉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센터의 재정) ① 시장은 센터의 제17조(센터의 재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 등" 이라 한 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 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센터 운영 세입 ·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한다.

제17조의3(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 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 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전액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전액

2. 프로그램 이용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u>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u>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자 녀: 전액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액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 공자: 전액
- <u>마.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u> <u>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u> 에 따른 다자녀가정: 50퍼센트
-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인 및 자녀: 50퍼센트
-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퍼센트
- 아.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 우대상자: 50퍼센트
- ②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제21조(위탁운영) ① ----------- <u>시립어린이집을 「사</u> <u>회복지사업법」</u>-----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및 <u>「영유</u> <u>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u>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른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u>의한</u>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 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u>「영유아보육</u> 법 시행규칙」제25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u>인하여 시설</u>을 멸실 또는 훼 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 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9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u>다음</u>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u> </u>
제	24조(수탁자의 의무) ①
	<u>따른</u>
	②·③ (현행과 같음)
제	25조(위탁의 취소) ①
	<u>「영유아보육</u>
	법 시행규칙」 제25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	28조(손해배상)
.,	시설
	제5장 비용
ᆀ	
	29조 <u>(비용의 보조)</u> <u>법 제36조</u>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u> </u>
	M 4 9

-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
- 3.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종전의 29조3호는 삭제,29조 4호에서 이동]
- 4. 교재·교구비 [29조 5호에서 이동]
- 5. 대체인력 인건비 [29조 6호에서 이동]
- 6. ~ 10. (생략)
- 1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12. (생 략)
- 13.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신 설〉</u>

14. (생략)

- 제31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 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김포

-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 수·보수 비용
- 2.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 3. 교재·교구비
-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 6.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11. (현행 제12호와 같음)

〈삭 제〉

- 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 활 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14. (현행과 같음)

제35조(준용) -----

----- <u>「김포시 지방보</u>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 조금 관리 조례」----다.

<u>〈신 설〉</u>

[별표 1]

김포시 육이종합지원센터 시설 사용료(제17조의2 관련)

	구	분	カス	사용료	
명	칭	사용목적	기준	면적기준(㎡)	금액
기본	공연 공연, 발표, 장 교육행사 등		1회 2시간	165 이하	20,000원
시설	회의 실	회의, 학습 등	1회 2시간	34이상~ 165이하	20,000원
	Ų	생난방비	1회 2시간	10,000원	
	<u>C</u>	음향기기	1회 2시간	20,000원	
부속 설비	영사기		1회 2시간	10,000원	
	조명	일반	1회 2시간	10,000	원
		종합	1회 2시간	15,000	원

※ 이용 주의사항

- ① 기준시간 2시간으로,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 시간으로 봄
- ② 시간당 요금은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적용
- ③ 초과시간 30분 이내의 경우 시간당 요금의 50퍼센트, 30분 초과시 100퍼센트 적용
-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⑤ 설비 설치 및 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u>〈신 설〉</u>

<u>〈신 설〉</u>

[별표 2] 김포시 육이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제17조의2 관련)

구 분		대여(이	금액	비고
명칭	사용목적	용)기준	υ¬	1175
상담	일반상담	ı	먯	* 검사료 별도
70° E	전문상담	1회	50,000원 이하	* 검사료 별도
장난감 도서관	개인	15일	연 10,000원	
교육 (부모,	교육 및 세미나 (부모, 보육 교직원)		무료	* 교재, 재 료비 별도
영유아 교육 체험 <u>프로그</u> 램		-	무	* 교재, 재 료비 별도
안전·문화 체험관		ı	먯	
아이사랑놀이터			무료	
어린이 공연		1명	5,000원 이하	

[별표 3]

이용료 등 반환 기준(제17조의3 관련)

○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 이 용 취소 및 중지 된 경우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하 또 는 중지된 경우	전액
시설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프로그램 이용료

	<u> </u>						
	반환금액						
모집 기 지 못	수강료 전액						
프로그	프로그램 개설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2/3			
	프로 그램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1/2			
	<u>~</u>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 안함			
	장난감 도서관	납부일로부터 30일 미만	서비스 미이용	이용료 전액			
프로그램 개설 후			서비스 이용	이용료의 1/2			
		납부일로부터 30일이상~90일미 만	서비스 미이용	이용료의 1/2			
		납부일로부터 30일 이상	서비스 이용	반환 안함			
		납부일로부터 90일 이상	서비스 미이용	반환 안함			
비고	총 수업 시간은 강좌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u>〈신 설〉</u>

<u>〈신 설〉</u>

[별지 제1호서식]

이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						
이 용 자	시 설 명 (강좌명)			(반)
(수 강 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감면 (겨부	□ 50¤	터센트	감면 □ 1	.00퍼센트	감면
감면시	ት					
실제납부 이용 (시설에서 /	금		원 (₩)	
이용기간(수			~			
	보육 조례」 을 신청 합 ¹		조의3	에 따라	이용료(수	강
	년		월	일		
	청인 :		(서	명 또는 '	인)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						
د دا د	시 설 명 (강좌명)		(반)		
이 용 자 (수 강 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반환 이용. (시설에서	료(수강료) 산정 기재)	금	원 (₩)		
감면대상	자 여부	Ź	l면, b]감면		
실제납부 이용료 (수강료)	금		원 (₩)		
이용기간 (수강기간)			~			
계좌입금	거래은행		예금주명			
통 장	계좌번호					
반 환 신청사유						
「김포시 보육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이용료(수강 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릴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						

참고 1

현행 조례

김포시 보육 조례

[시행 2021. 7. 13.]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825호, 2021. 7.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김포시 보육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위탁에 관한 사항
-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4.17.〉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김 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경우 보육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2. 보육전문가
- 3. 관계공무워
- 4. 어린이집 원장
- 5. 보육교사 대표
-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제3항을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7.〉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17〉
 - 1. 〈삭제 2019.4.17〉
 - 2. 〈삭제 2019.4.17〉
 - 3. 〈삭제 2019.4.17.〉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시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9.27〉
 -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7.]
- 제8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7.]
-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 2.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9.〉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 2014.2.12)

-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2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신설 2014.2.12)
 -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 구직 정보의 제공
 -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4.2.12)
 -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4.2.12)
-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14.2.12)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신설 2014.2.12)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2.12)
- ② 센터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 요원등을 둔다.
 -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 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수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3. 수탁자가 제12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제16조(주민의견 수렴)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그 밖에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7조(센터의 재정)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장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 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야간 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다문화 등 특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명칭) 시립어린이집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 제20조(업무) 시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 2.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시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 제2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시장은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 제23조(운영재정)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 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 제2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존 제2항 삭제, 제3항에서 이동 2019.4.17〉
 -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기존 제4항에서 이동 2019.4.17>

제26조 〈삭제 2017.9.27.〉

- 제2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 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 할수 있다.
- 제2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 제29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
 - 3.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종전의 29조3호는 삭제, 29조 4호에서 이동<2015. 9.30>]
 - 4. 교재·교구비 [29조 5호에서 이동〈2015.9.30〉]

- 5. 대체인력 인건비 [29조 6호에서 이동〈2015.9.30〉]
- 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설 2015.9.30)[종전의 29조6호는 29조5호로 이동〈2015.9.30〉]
- 7. 장애아 보육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종전의 29조7호는 삭제, 29조 8호에서 이동<2015.9.30>]
- 8.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개정 2015.9.30)
- 9.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개정 2015.9.30)
- 10.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종전의 29조10호는 삭제, 29조 11호에서 이동〈2015.9.30〉]
- 1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신설 2015.9.30)[종전의 29조11호는 29조10호로 이동 <201 5.9.30>]
- 1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개정 2015.9.30)
- 13.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9.30)
- 14. (삭제 2015.9.30.)
- 제30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받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 1. 시설운영이 정지 ·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31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21.7.2.)

제6장 지도 및 감독

- 제32조(지도 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 제33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때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7.9.27.]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2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문서번호	보육과-16332
등록일자	2022. 9. 16.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보육정책팀장	보육과장	복지과장 대결 2022. 9. 16.	복지교육국장 전결	
조진희	조문순	최명순	강영화		
협 조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김 포 시 보 육 과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김포시 보육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에 대한 결과보고임

1 입법예고 개요

- O 자치법규명: 김포시 보육 조례
- O 입법예고기간: 2022. 8. 24. ~ 9. 13.(20일간)
- O 주요내용
- 가. 개정사항 정비
 - 위원 15명 → 20명(안 제5조제1항)
 - 보육업무 담당국장 → 보육업무 담당 국·과장(안 제5조제2항)
 - 위탁기간 3년 → 5년(안 제14조제2항)
- 나. 인용사항 정비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위원의 임기(안 제6조)
 - 비용의 보조와 관련된 인용사항 정비(안 제29조제1호)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규정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신설(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3까지)
-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2 입법예고 결과

- O 제출의견: 2건 [보육과-16092 (2022.09.13.)]
- O 제 출 자: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O 제안내용

제출자	내 용	검토의견
	1. 병역의무를 이행한 아빠들이 육아종합 지원센터 <u>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대상</u> 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김포시 어린이집 연합회	2.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임기가 없기에 원장의 <u>'잔여임기</u> '라는 문구를 <u>정부의</u>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 변경 검토 요청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50퍼센트 (반영)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반영 (2021년 지침 변경) o 당초: 원장의 "잔여임기"
		o 변경: 원장의 <u>위탁계약 가능 기간이</u>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 <개정문구〉 제22조(위탁계약)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장의 <u>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u> 지급 상한 연령으로 부터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의견반영 관계법령 : 붙임4
- O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절차완료(체크리스트 제출)
- O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3 향후계획



4 조치의견

- O 상기와 같이,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2건 반영)을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고, 법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붙임 1.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2. 입법예고문 1부.
 - 3. 의견서 제출 공문 1부.
 - 4. 의견반영 관계법령 1부.
 - 5.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 6.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 7.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붙임 4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링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page 21

6.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다. 기본원칙

4)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함. 다만,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_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가능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20.]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82호, 2020. 12. 31., 일부개정]

-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갂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

참고 3 어린이집 연합회 의견서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수 신 김포시 보육과

참 조

제 목 김포시 보육 조례 개정안 의견 제출

-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육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 2022년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 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담 당 이은경

회 장 박 은 주

시 행 김어련-2022039(2022.09.13)

접 수 2022 .09. 13

(10057) 김포시 한강 8로 281 관리동(마산동,한강신도시 레이크 에일린의 뜰)

전화: 031-984-3988 / 전송: 031-982-0960 / E-mail: hara0108@hanmail.net

-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안 명 :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 주 소 :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번지

○ 전 화 번 호 : 031-984-3988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고
이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안 제17조의3)	요즘은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아빠와 아이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아빠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를 감면 또는면제할 때 병역 명문가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포시 보육조례 개정 시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병역 명문가"를 포함 하는 것을 검토 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계약 (안 제22조 제2항)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보육 조례」의 22조 제2항 (위탁계약) 내용을 보면 '원장의 <u>잔여임기</u>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로 여겨지는 기준은 <u>정</u> 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 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 시 ' <u>잔여임기</u> '라는 문구를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라는 문구로 바꾸는 것을 검토 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